2026 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

[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1. 계약목적

- 센터와 이용대상자(보호자)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.
- 대상자(보호자)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2. 이용계약

- 계약은 대상자(이용자)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-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 ②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**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”**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 ③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(이하 ‘계약서’라 한다)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.

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.
 - 계약당사자(서명 포함)
 -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
 -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
 - 장기요양인정번호 및 등급

3. 계약기간

-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
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. 다만, 이용대상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□ 기본의무

센터는 수급자(보호자)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.

- 센터 일반정보, 제공 서비스 유형, 서비스 시간, 횟수, 비용부담, 제도 설명, 등급 등에 관한 사항.
- 계약 체결 시 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-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

4. 준수사항

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 약관으로 제공한다.

[이용대상 및 서비스제공절차]

1. 이용대상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(장기요양급여수급자)
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
③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2. 모집방법

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이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② 기관에 대한 홍보 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및 유인 알선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3. 서비스제공의 절차

1. **신청 접수** :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,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.
2. **사전 방문**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.
3. **사정회의** :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.
4. **서비스계약 체결**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.
 ※ 기초수급자(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),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, 군,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.
5. **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** :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,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, 서비스 제공 후

심신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.

[서비스의 내용]

1. 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· 일상생활 지원서비스, 개인활동, 정서지원, 기능회복 훈련서비스, 치매관리 지원서비스,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.

구분	세부내용	구분	세부내용
신체활동지원		**인지활동지원**	
세면도움	얼굴과 목,손 씻기등, 사용물품정리,세면대 까지의 이동 포함	인지자극 활동	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,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, 준비물품 정리
구강관리	구강청결(양치질 등),양치 지켜보기,가글액.물양치,틀니손질,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일상생활 함께하기	잔존기능 유지.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,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
식사도움	식사차리기,식사보조,구토물 정리	**정서지원**	
몸단장	머리단장,손발톱 깍기,면도, 면도 지켜보기,화장하기,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말벗, 격려	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상담, 대화.편지.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
옷갈아 입히기	의복준비(양말,신발포함),지켜보기 및 지도, 겉옷 및 속옷갈아입히기, 의복정리	**가사 및 일상생활지원**	
머리감기기	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,머리감기, 머리말리기,필요물품의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외출 시 동행	장보기,은행,관공서,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(차량 이용 포함)하고 책임 귀가
목욕도움	입욕준비,입욕 시 이동보조, 몸씻기(샤워포함),옷 갈아 입히기. 사용물품 정리	일상업무 대행	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. 관공서 업무대행등
화장실 이용하기	화장실 이동지원,배뇨.배변도움,지켜보기,기저귀교환,용변 후 처리지원,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	식사준비	수급자를 위한 식.재료의 준비,밥 짓기,국.반찬하기,식탁청소,설거지,행주삶기,음식물 쓰레기 정리등
바이동도움	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보행도움, 산책	청소 및 주변정돈	수급자가 거주하는 장소(방,거실),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배출,내부정리,이부자리 정돈,옷장.서랍장등의 정리
체위변경	체위변경, 일어나 앉기 도움		
신체기능의 유지.증진	관절구축 예방활동,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,기구사용운동보조,보장구 이용도움	세탁	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침구류,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

2. 방문목욕 : 목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말리기, 옷갈아입히기,
목욕 후 주변정리 한다.

[서비스 이용료]

1. 방문요양,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

□ 방문요양

분류번호	분류	수가표		
		평일	야간(20%)	공휴일(30%)
가-1	30분이상	17,450	20,940	22,685
가-2	60분이상	25,320	30,384	32,916
가-3	90분이상	34,120	40,944	44,356
가-4	120분이상	43,430	52,116	56,459
가-5	150분이상	50,640	60,768	65,832
가-6	180분이상	57,020	68,424	74,126
가-7	210분이상	63,530	76,236	82,589
가-8	240분이상	70,080	84,096	91,104

□ 방문목욕

분류번호	분류	수가표		
		평일	야간(20%)	공휴일(30%)
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내 목욕)	88,990	106,788	115,687
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내 목욕)	80,230	96,276	104,299
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경우	50,100	60,120	65,130

□ 재가급여 월 한도액

장기요양 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월 한도액(원)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※.재가급여 원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※.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비용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~ 9%

2. 본인부담금 납입

①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 후 익월 **10일**까지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.

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**20일**까지,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

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.

3.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

1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.
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
 ② 고시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
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
 ④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
2.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 하고 변경 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.
3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

[계약자, 수급자의 의무]

1. 서비스제공자 의무

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)

② “갑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
⑤ 기타 “갑”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2. 수급자(보호자)의 의무

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의무
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권리
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
⑤ 대상자(이용자)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⑦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

3.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

신원 인수인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신원 인수인의 권리

①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
② 대상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
③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④ 대상자의 처우개선, 불편사항,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- 신원 인수인의 의무

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
② 대상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
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⑤ 대상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,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

4. 계약해지

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,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① 센터는 대상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.
② 대상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③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⑤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⑥ 이용료 본인부담금 ‘을’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 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“을”, ‘갑’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“을”이 인정할 경우

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
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“을 “이 판단할 경우
⑩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